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인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128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03월 10일
발 의 자: 황인구 의원(1명)
찬 성 자: 권순선, 김 경, 김상진,
김생환, 김수규, 김용연,
문영민, 양민규, 이동현,
이석주, 이호대, 전병주,
최기찬 의원(13명)

1. 제안이유

- 상위 법령인 「환경교육 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농촌유학(도농교육교류협력) 등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 계획에 관련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기금 사용에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한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의 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환경교육 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2조제1호)
- 나. 생태전환교육 계획 수립 시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과의 생태전환교육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5호)
- 다. 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업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및 교육청으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과의 생태전환교육 교류협력 증진 방안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용도에 따라 기금을 재원으로 집행되는 사업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태전환교육”이란 서울특별시 내 각급학교의 학생 등에게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가 규정하는 환경교육에 기반을 두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개인의 생각과 행동 양식뿐만 아니라 조직문화 및 시스템까지 총체적인 전환을 추구하는 교육을 말한다.</p> <p>2.·3. (생 략)</p> <p>제5조(생태전환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교육청 생태전환교육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1. ~ 4. (생 략)</p> <p><신 설></p> <p>5. ~ 7.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 -----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 ----- -----.</p> <p>2.·3. (현행과 같음)</p> <p>제5조(생태전환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①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국내 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과의 생태전환교육 교류협력 증진 방안</u></p> <p>6. ~ 8. (현행 제5호부터 제7호</p>

② (생 략)
제11조(기금의 용도) (생 략)

<신 설>

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용도에 따라
기금을 재원으로 집행되는 사업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
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에 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